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시가스 충전사업의 범위에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사업을 추가하고, 대량수요자의 범위에 선박연료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추가하여 선박에 대하여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구역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, 정압기지·밸브기지 및 지구정압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 <지식경제부 제공>

**국 무 총 리 훈 령**

●국무총리훈령 제575호

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1년 11월 4일

국 무 총 리 인

**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폐지령**

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폐지이유 및 주요내용
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10534호, 2011. 4. 4. 공포, 10. 5. 시행)되어 다문화가족 지원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중복적으로 설치·운영되지 않도록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.

**고 시**

●금융위원회고시제2011-20호

「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」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11월 4일

금 용 위 원 회

1. 개정이유

과징금 부과체계 등을 단순화·명확화·합리화하여 제재양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□ 과징금 부과체계 간이화

- 기존 6단계인 과징금 부과단계를 차등화된 부과비율을 곱하여 바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 (6단계⇒4단계)